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무역위원회는 매국노 집단…”

무역위원회가 드디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내팽개치고 국가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의 대변기관으로 다시 탄생하게 됐다?

무역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판정함으로써 무역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무역위원회가 국내기업 보호를 명분삼아 독과점 재벌의 앞잡이로서 역할하기로 작심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일반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편파적인 판정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노라면 무역위원회가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재벌단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무역위원회가 독과점재벌의 앞잡이로 악명을 얻게된 것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판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나, 사실은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판정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이미 객관적인 잣대를 상실한 판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무역위원회는 1993년12월 중국산 소다회에 톤당 66.11%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동안 부과토록 판정한 이후 1997년 또다시 3년동안 23.43%를 부과했고, 2000년12월 25.61-26.47%의 덤핑방지관세를 2년동안 부과토록 결정했다. 동양화학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소다회에 대해 무려 9년동안 수입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무역분쟁 역사상 유례가 없음은 물론이다.

반덤핑 판정은 다음 3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반덤핑으로 제소된 해당품목의 가격이 정상 수출가격보다 크게 낮던가, 해당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국산의 판매가 막히던가 1차로 2가지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 1가지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품목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어야 한다. 만약,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면 반덤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산 소다회 수출단가는 톤당 1997년 186달러, 1998년 185달러, 1999년 166달러로 미국 ANSAC의 수출가격 1997년 174달러, 1998년 168달러, 1999년 159달러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도 1997년 2.8%, 1998년 3.2%, 1999년 7.9%로 ANSAC의 시장점유율 1997년 46.7%, 1998년 41.7%, 1999년 47.7%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동양화학은 1997년 이후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증가율이 국내 소비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되면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998년 소다회를 톤당 평균 26만5360원에 판매해 수익률이 32.2%, 1999년에는 원화환율 안정에 따라 23만361원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36.8%에 달했다. 산업피해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1997년 소다회 반덤핑 1차 연장시 중국을 사회주의 경제권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해 소다회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관세 70%를 부과하고 있는 인디아를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한 바도 있다. 1999년 중국산 소다회 수출가격 톤당 166달러에서 포장비, 내륙운송비, 운임 등 수출제비용을 공제해도 현지 수출가격(Ex-Price)이 110달러에 달해 도저히 덤핑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무역위원회가 12월4일 중국산을 반덤핑으로 판정해 수입을 규제하는 바람에 미국의 소다회 수출카르텔인 ANSAC이 12월5일 소다회 공급가격을 톤당 10달러 인상함으로써 국내 소다회 수요기업들은 미국산 수입량 40만톤을 기준으로 연간 400만달러(약 48억원)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동양화학과 ANSAC, 무역위원회가 짜고 친 고스톱, 즉 가격카르텔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다. ANSAC의 회원사인 OCI Chemical이 동양화학의 자회사라는 것을 모르는 화학산업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동양화학과 ANSAC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 행위를 시행한 꼴이 됐다. 유리, 세제 등 소다회 수요제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생산기업들이 피해를 입게됨은 물론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무역위원회가 소다회 수요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독과점 방지정책에 역행하며, 중국의 반

발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동양화학을 감싸고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는동양화학-ANSAC-무역위원회의소다회카르텔진상을철저히조사해의법조치해야할것이다.

<화학저널 2000/12/18 · 25>